



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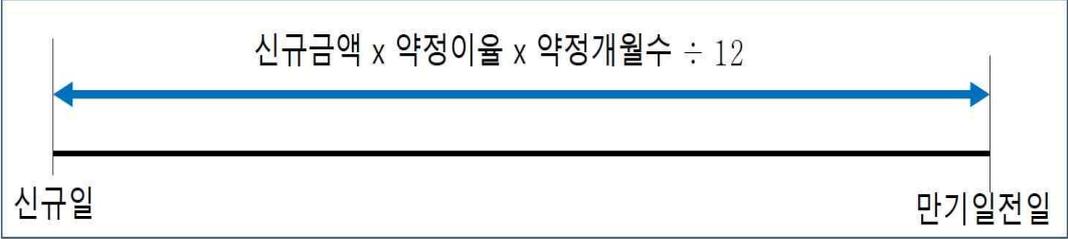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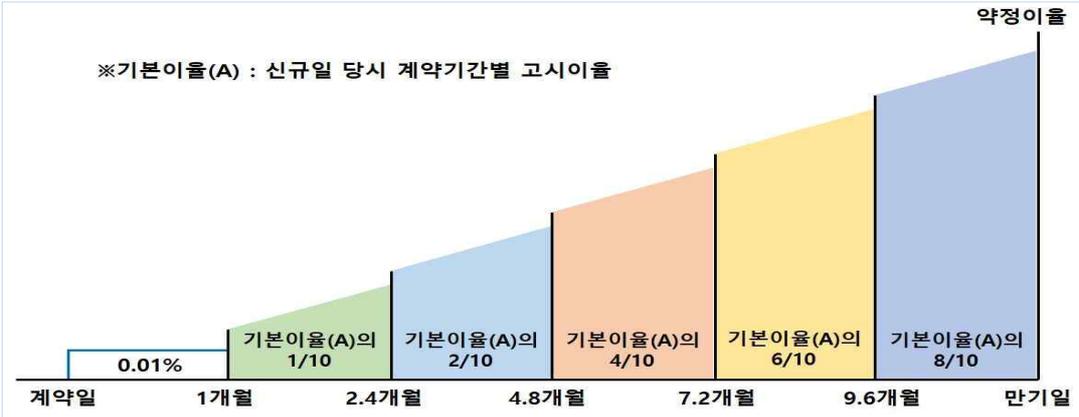
- 상품명 : 퇴직연금 정기예금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

2 거래조건

구분	내용														
가입대상	· 퇴직연금사업자														
상품유형	· 정기예금														
거래방법	· 신규 : 영업점 · 해지 :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해지														
가입금액	· 1원 이상														
계약기간	·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	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·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												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·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·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												
기본이자율 ('25. 9. 1. 기준, 세전)	· 주무부서에서 월 1회(1일)고시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계약기간</th> <th>3개월</th> <th>6개월</th> <th>1년</th> <th>2년</th> <th>3년</th> <th>5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리</td> <td>연2.10%</td> <td>연2.20%</td> <td>연2.53%</td> <td>연2.05%</td> <td>연1.95%</td> <td>연1.9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계약기간	3개월	6개월	1년	2년	3년	5년	금리	연2.10%	연2.20%	연2.53%	연2.05%	연1.95%	연1.95%
	계약기간	3개월	6개월	1년	2년	3년	5년								
금리	연2.10%	연2.20%	연2.53%	연2.05%	연1.95%	연1.95%									
※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															



* 2 1 9 9 0 1 9 8 0 *

우대이자율	·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
제휴이자율	·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
만기후이자율	·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
만기이자 산출근거	<p>·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약정이율 × 약정개월수 ÷ 12</p> 														
중도해지 이자율	<p>·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·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× (경과월수 / 계약월수) ·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1 1014 1449 1339"> <thead> <tr> <th>기간별</th> <th>적용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 경과분</td> <td>연 0.01%</td> </tr> <tr> <td>약정기간의 1개월 이상 20%이내 경과분</td> <td>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1/10</td> </tr> <tr> <td>약정기간의 20%초과 40%이내 경과분</td> <td>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2/10</td> </tr> <tr> <td>약정기간의 40%초과 60%이내 경과분</td> <td>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4/10</td> </tr> <tr> <td>약정기간의 60%초과 80%이내 경과분</td> <td>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6/10</td> </tr> <tr> <td>약정기간의 80%초과 100%미만 경과분</td> <td>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8/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간별	적용이율	1개월미만 경과분	연 0.01%	약정기간의 1개월 이상 2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1/10	약정기간의 20%초과 4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2/10	약정기간의 40%초과 6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4/10	약정기간의 60%초과 8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6/10	약정기간의 80%초과 100%미만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8/10
기간별	적용이율														
1개월미만 경과분	연 0.01%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1개월 이상 2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1/10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20%초과 4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2/10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40%초과 6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4/10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60%초과 80%이내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6/10														
약정기간의 80%초과 100%미만 경과분	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계약기간별 실행이율의 8/10														
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	<p>· 계산방법(예시)</p>  <p>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</p>														

예금자보호 여부	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 퇴직연금(IRP) :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	미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: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세제혜택	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
재예치	(DB) 가능 (DC, IRP) 불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이 예금은 가입시 또는 만기일 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씌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으로 자동재예치되며,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 나. 재예치 후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 2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IRP(기업형, 개인형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이 예금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1조의3에 따라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다만, 사전지정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 됩니다. 나.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부분인출	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만기 전 부분인출 지급액에 대하여 정해진 중도해지이자 지급 · 만기 전 부분인출 횟수는 2회 이내 · 부분인출 횟수의 예외 적용 사유(인출횟수 제한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 -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가입자별 3회 이내에서 부분인출 가능
양도 및 담보제공	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
계약해지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해지 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·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

<p>자료열람 요구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구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•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<p>휴면예금 및 출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 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•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<p>연계·제휴서비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사항 없음

3 유의사항

-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
- 특별 중도해지 인정 :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.
 - ① 퇴직,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 - ③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
 - ④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⑤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⑥ 수탁자의 사임
 - ⑦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
 - ⑧ 퇴직연금 계약 관련 수수료의 징수
- ※ 위 각 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(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- 1) 계약기간이 3월, 6월, 1년인 계약 : 계약기간별 약정이율
 - 2) 계약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내인 계약
 - 가.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: 1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
 - 나. 예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: 2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
 - 다. 예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: 3년제 계약기간 약정이율

이 상품은 전북은행 수신추진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4477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jbbank.co.kr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	고정금리	변동금리
이용 형태		
특징	▶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▶ 일정주기(3/6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
장점	▶ 시장금리 하락기 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▶ 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
단점	▶ 시장금리 상승기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▶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전북은행 / 신탁연금부 / 101-155 / 219066 / 2025-08-27 09:14:27 / 김****

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